

종 합 감 사

감 사 보 고 서

- 행정심판국 종합감사 -

2020. 7.

국민권익위원회

감사담당관

목 차

I. 감사실시 개요	1
II. 감사대상부서 현황	3
III. 감사결과	5
1. 감사결과 총괄	5
2.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7
(1) 무분별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해 답변서 없이 처리할 수 있는 방안 마련(개선) ·	7
(2) 피청구인 답변서 제출 지연에 효과적인 대책 마련(개선·권고) ..	13
(3) 민원처리법령상 처리기한 준수 부적정(통보·통보)	18
(4) 업무 인계인수 시 문서 ‘인계인수시스템’ 을 통한 관리 부적정(개선) ..	27
(5) 특근매식비 부적정 집행 및 특근매식비 집행 증빙자료 미흡(시정주의) ...	31
(6) 업무추진비 50만원 이상 집행 관련 규정 미준수(주의)	34
(7) 정부구매카드 사용 후 실명서명 미흡(주의)	37
(8) 수요자 중심의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도 운영(통보[모범사례]) ..	39

I.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2020년도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행정심판국의 조직과 주요사업 수행, 예산·회계집행 등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을 통해 행정심판국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향상 및 주요 사업의 실효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이번 감사를 실시하였다.

2. 감사중점 및 대상

이번 감사에서는 2018년 4월부터 2020년 5월까지 행정심판국이 수행한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주요업무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업무 처리에 대한 적법성 및 규정준수에 관한 사항, 예산집행의 적정성 및 예산 낭비 요인 유무 확인, 지난 감사결과에서 도출된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여부, 불합리한 업무처리로 인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3. 감사실시 과정

실지감사에 앞서 감사 대상부서인 행정심판국에 2020. 5. 27. 공문을 발송하여 감사 대상 자료를 2020. 6. 5.까지 제출토록 요구하였으며, 6. 8.부터 7. 3.까지 20일간 감사반장인 감사담당관 포함 감사인원 3명을 투입하여, 제출된 자료와 추가 요구자료 검토, 문서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확인한 자료를 바탕으로 실지감사를 실시하였다.

4. 감사결과 처리

감사결과 확인된 부적정 및 개선사항과 관련하여 2020. 7. 15.부터 7. 24.까지 업무처리 경위와 향후 처리대책 등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받는 등 주요 지적·개선 사항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후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감사대상 부서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포함하여 지적·개선 사항에 대한 검토를 하고 2020. 7. 30.에 사무처장 보고를 거쳐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Ⅱ. 감사대상부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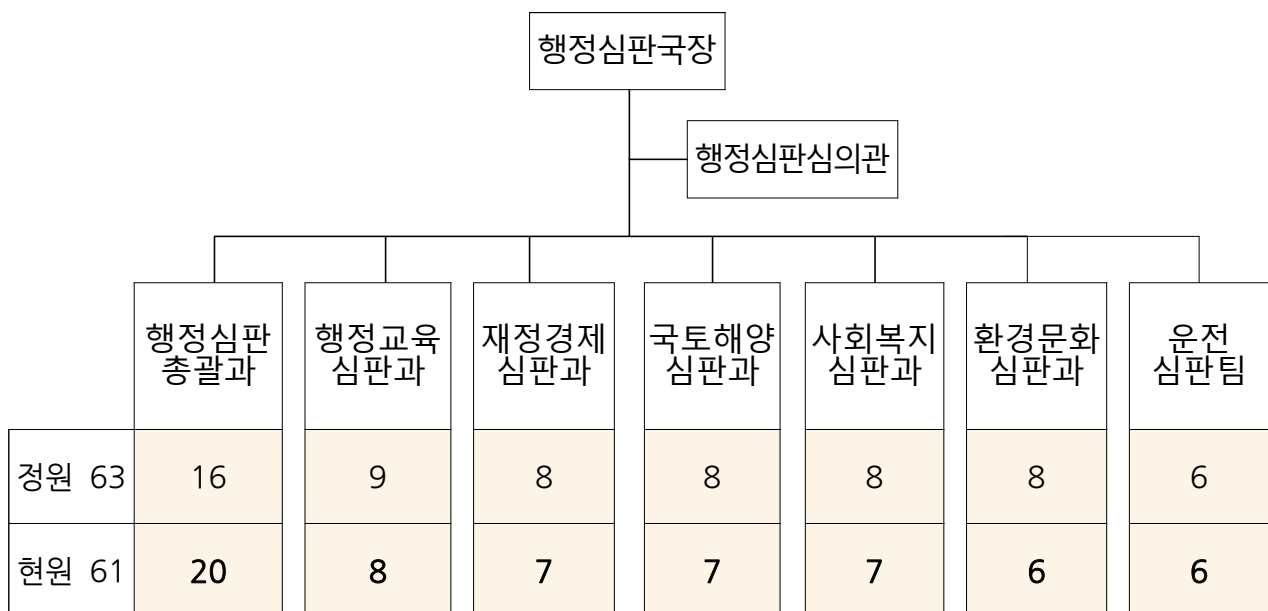
1. 임무와 기능

행정심판국은 「헌법」 제107조제3항, 「행정심판법」 제6조제2항,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9호 등에 따라 행정심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국가기관, 광역자치단체장 등의 처분에 대해 국민이 청구한 행정심판사건의 심리·재결, 불합리한 법령 등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조직과 인력 현황

행정심판국은 [그림 1]과 같이 2020년 5월 말 현재 1국, 1심의관, 6과·1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정원은 63명이며, 현재 인원은 61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림 1] 행정심판국 조직도



3. 예산 현황

공무원 인건비를 제외한 행정심판국 2020회계연도 세출예산은 행정심판위원회 운영비 7억 4백만 원, 전문검토위원 상용임금 2억 7천 6백만 원 등 [표 1]과 같이 11억 6천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1] 2020년도 세출예산

(단위: 백만원, %)

구분	2019년 예산(A)	2020년 예산(B)	증감	
			차이(C=B-A)	증감률(C/A)
합계	995	1,160	165	16.6%
전문검토위원 상용임금	258	276	18	7.0%
행정심판위원회 운영비	582	704	122	21.0%
국내여비	64	81	17	2.7%
국외여비	10	10	0	0.0%
업무추진비	28	31	3	10.7%
행정심판경연대회 포상금	6	6	0	0.0%
고용부담금	47	52	5	10.6%

Ⅲ. 감사결과

1. 감사결과 총괄

이번 감사결과, [표 2]와 같이 총 11건의 위법·부당 및 제도개선 사항이 확인되어 이에 대한 주의요구를 하거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고, 1건의 모범사례는 향후 연말 자체감사 포상 추천 등 인센티브 제공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감사결과 현황

구분	합계	시정	주의	개선	권고	통보
건수	12	1	4	3	1	3

가. 행정심판 업무 분야

- **(무분별한 심판청구 대책 마련)** 욕설·비방 등이 포함된 무분별한 행정심판 청구가 연 수백에서 수천 건('18년 906건, '19년 1,828건)이 제기되어 다른 행정심판사건 처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 청구내용을 특정할 수 없거나 보정할 수 없는 행정심판사건 등에 대해서는 답변서 없이 각하할 수 있는 방안 추진(**개선요구**)
- **(답변서 제출지연 대책 마련)** 피청구인 답변서 제출 지연으로 재결기간이 지연 되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으나 현행 법령 상 효과적인 대처방안이 없으므로
 - 「행정심판법」 개정 등을 통해 행정청이 답변서를 신속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개선요구**)
 - 정당한 이유없이 답변서 제출을 과도하게 지연하는 경우 해당 행정청 감사관실로 통보하여 답변서 제출현황을 자체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권고**)
- **(수요자 중심 국선대리인제도 운영)** 행정심판 청구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 국선대리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시행('18.11.)하고, 불편사항인 증빙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법령에 반영·시행('20.7.1.)(**통보 [모범사례]**)

나. 예산집행 등 공통업무 분야

- **(민원처리기한 준수 등)**민원처리법령상 준수해야 할 처리기한과 이송시간 등을 준수하지 않은 사항이 있고, 민원으로 들어오는 제도나 운영 개선 건의사항은 업무개선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 반영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므로
 - 민원처리기한 등 민원처리법령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고**(통보)**
 - 건의 민원 등의 내용 중 필요한 사항은 현행처럼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주시기 바람**(통보)**
- **(인계인수관리시스템을 통한 인계인수 부적정)**업무 인계·인수 시 실제 인계·인수·입회와 함께 온나라 '인계인수시스템'을 통해서도 완료되어야 하지만, 시스템상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건이 있으므로
 - 앞으로는 인계·인수시스템 상으로도 완료되도록 하시기 바람**(개선요구)**
- **(특근매식비 지급 부적정 및 증빙 첨부 미흡)** 특근매식비는 정규근무시간 외 2시간 이상 근무해야 지급 가능하지만, 2시간 미만 근무한 경우에도 지급한 경우가 있으므로
 - 잘못 지급한 48천원에 대해서는 환수하시기 바람**(시정)**
 - 앞으로 특근매식비 지급 시 시간 확인 철저 바람**(주의요구)**
 - 특근매식비 증빙자료 첨부 바람**(주의요구)**
- **(업무추진비 50만원 이상 집행 관련 규정 미준수)** 업무추진비 50만원 이상을 집행할 때는 관련 품의서에 주된 상대방의 소속·성명 기재가 필요하고, 실·국장 전결로 처리해야 함에도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있으므로
 -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기 바람**(주의요구)**
- **(정부구매카드 전표 서명 일부 누락)**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할 때는 카드전표에 실명으로 서명해야 하지만, 서명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 앞으로 카드전표에 서명을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람**(주의요구)**

2.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명세: 별도 첨부자료 참조(뒷면부터)

국 민 권 익 위 원 회

개선요구

제 목 무분별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해 답변서 없이 처리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소 관 부 서 행정심판국

조 치 부 서 행정심판국

내 용

1. 업무 개요

행정심판국은 「행정심판법」 제23조, 제24조, 제26조에 따라 행정심판청구서를 접수·처리하고 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사실 조사·확인, 법률 검토 등을 통해 사건을 심리하고 위원회를 개최하여 사건에 대한 재결을 하여 재결결과에 따라 재결서를 작성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 당사자에게 재결서를 송달한다.

최근 2년간 행정심판 처리현황을 보면, 2018년은 23,043건을 접수하였고 심리·의결 건수는 25,153건¹⁾이었으며, 2019년에는 24,076건을 접수했고, 21,534건을 심리·의결했다.

2018년 심리·의결한 25,153건 중 인용된 건수는 3,814건으로, 인용률(인용건수 / (인용건수 + 기각 건수)은 16.8%였고, 각하된 건수는 2,411건으로, 각하율(각하 건수 / 심리의결 건수)은 9.6%였다.

2019년 심리·의결한 21,534건 중 인용된 건수는 1,567건이었으며, 각하된 건수는 5,801건이었는데, 인용률(인용건수 / <인용건수 + 기각건수>)은 10.0%였고,

1) 접수 건수와 심리·의결 건수는 접수 후 처리기간이 소요되므로 일치하지 않음

각하율은(각하 건수 / 심리의결 건수)은 26.9%였다.

2018년에 비해 2019년의 인용률은 6.8%p 낮아졌고, 각하율은 17.3%p 높아졌다.

[표 3] 최근 2년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연도별 행정심판 처리현황

(단위: 건)

연도	구분 접수	심리·의결				인용률(%) B/(B+C)	각하율 D/A	취하·이송
		계 (A)	인용 (B)	기각 (C)	각하 (D)			
2018년	23,043	25,153	3,814	18,928	2,411	16.8	9.6%	1,401
2019년	24,076	21,534	1,567	14,166	5,801	10.0	26.9%	1,271

(자료 : 행정심판국 자료 재구성)

각하 건수가 증가한 주요 원인으로는 특정인 3명이 타인에 대한 비방·모욕 등의 내용을 담아 청구내용을 특정할 수 없거나, 동일·유사한 내용의 반복 청구에 해당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²⁾

최근 2년간 이러한 심판을 청구하는 특정인 3명의 행정심판 건수는 2,734건(최근 2년간 행정심판 접수 건수 47,119건 대비 5.8%)에 달하며, 특히 2019년의 경우 1,828건이나 돼 행정력의 낭비 요인이 되고 있다.

[표 4] 최근 2년간 특정인 3명의 행정심판 반복 청구 현황

(단위: 건)

청구인	계	○○○	○○○○	◆◆◆
계	2,734	1,811	601	322
2018년	906	392	307	207
2019년	1,828	1,419	294	115

(자료 : 행정심판국 자료 재구성)

* 행정심판 건수는 본안 청구 건과 기타 청구 건이 합산되어 있음

2.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행정심판 접수·처리는 「행정심판법」 제23조, 제24조, 제26조에 따라 처리

2) 2020.2.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위 검토보고서

하도록 되어 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서 접수 후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하여 행정심판위원회로 제출하도록 돼 있으며,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에게 답변서 부분을 송부하도록 되어 있다.

「행정심판법」 제24조제1항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접수하거나 송부받으면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와 답변서를 위원회에 보내도록 하고 있다.

「행정심판법」 제23조(심판청구서의 제출) ①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제28조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피청구인이나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청구인의 수만큼 심판청구서 부분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피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등의 접수·처리) ① 피청구인이 제23조제1항·제2항 또는 제26조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접수하거나 송부받으면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제23조제1항·제2항의 경우만 해당된다)와 답변서를 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취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위원회의 심판청구서 등의 접수·처리) ① 위원회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피청구인에게 심판청구서 부분을 보내야 한다.

[표 5] 행정심판청구서 접수·처리절차

행정심판 청구	■ 청 구 인: 피청구인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서 제출
답변서 제출	■ 피청구인: 청구서 접수 후 10일 이내 답변서를 작성하여 행정심판위원회로 제출
답변서 송부	■ 행정심판위원회: 청구인에게 답변서 부분 송부

「행정심판법」 제32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면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청구인은 서면으로 보정하여야 한다. 경미한 사항은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보정할 수 없는 심판청구의 처리에 대한 규정은 없다.

「행정심판법」 제32조(보정) ①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나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하면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② 청구인은 제1항의 요구를 받으면 서면으로 보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당사자의 수만큼 보정서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및 개선사항

현행 행정심판은 모든 청구사건에 대해 피청구인에게 답변서를 제출받아 사건을 처리하는 절차로 진행하고 있다.

행정심판국에서 최근 2년간 사건 검토를 담당하는 실무 인력 1명 당 처리 건수는 연 평균 569건에 이를 정도로 많았다.

[표 6] 최근 2년간 연도별 심판처리담당자 1인당 연도별 처리 현황

연도	심리·의결 건수	실무인력 ³⁾	1명당 처리
합계/평균	46,687 (2년 합계)	41명	569.4건 (연 평균)
2018년	25,153	41명	613.5건
2019년	21,534	41명	525.2건

이에 따라 처리기간을 도파하는 사건처리 건수가 상당수 나타나고 있었다.

사건처리 건수가 많을수록 평균 재결기간도 늘어나고 처리기간 도파 건수도 증가했다. 처리 건수가 25,153건인 2018년의 경우 평균 재결기간은 82.6일이고, 처리기간 도파 건수 비율이 24.3%였던데 비해, 처리 건수가 상대적으로 감소한 2019년은 평균 재결기간 68.8일로 전년 대비 13.8일 줄었고, 처리기간 도파 건수(3,603건) 비율(16.7%)도 전년 대비 7.6%p 줄었다.

3) '20.5. 기준 직접 안건 심리·의결을 하지 않는 행심총괄과를 제외한 안건 심리·의결을 하는 5과·1팀 현원 모두(과장 포함)를 합한 인원 수, 공무원 안건검토위원 수는 포함되지 않음

[표 7] 최근 2년간 연도별 사건유형별 재결기간 현황

(단위 : 건, %)

연도별	유형별	총 건수	평균 재결 기간 ⁴⁾	처리기간내 재결 건수		처리기간 초과 건수 (90일 경과)
				~60일	61~90일	
2018	계	25,153	82.6일	15,774 (62.7%)	3,277 (13.0%)	6,102 (24.3%)
	일반	5,251	195.8일	706	458	4,087
	보훈	1,442	140.3일	169	248	1,025
	운전	18,460	45.9일	14,899	2,571	990
2019	계	21,534	68.8일	16,209 (75.3%)	1,722 (8.0%)	3,603 (16.7%)
	일반	7,607	111.1일	3,811	1,044	2,752
	보훈	1,148	109.8일	167	230	751
	운전	12,779	39.9일	12,231	448	100

(자료 : 행정심판국 자료 재구성)

1인당 연도별 처리 건수 등을 고려했을 때 행정심판 처리 기간을 줄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인력을 확충하는 일이다.

그러나, 인력이 바로 확충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제도적 개선방안도 병행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적극적인 해결방법으로 무분별한 행정심판사건 청구 즉, 타인에 대한 욕설·비방·모욕 등이 기재되어 청구 내용을 특정할 수 없거나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청구인의 답변서 제출 의무를 면제하고, 답변서를 제출받지 않거나 보정요구 없이도 위원회가 그 심판청구를 각하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것이다⁵⁾.

「행정심판법」 제32조(보정) ①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나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하면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② 청구인은 제1항의 요구를 받으면 서면으로 보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당사자의 수만큼 보정서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 평균재결기간 : 처분청 접수일 - 재결일

5) 이 방안은 '20. 2. 국회 정무위원회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9쪽 내용을 참조한 것임

⇒ (개선안)⁶⁾ 위원회는 청구인이 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 내에 그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

위원회는 심판청구서에 타인에 대한 욕설 또는 타인을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청구 내용을 특정할 수 없거나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2항에 따른 답변서를 제출받지 아니하거나 제32조 제1항에 따른 보정요구 없이 그 심판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

관계부서 의견

행정심판국은 관련 문제점에 공감하면서, '19.10.7. 「행정심판법」 개정안을 전원위원회에 상정하고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려 했으나, 국회에서 같은 취지의 입법발의 움직임이 있어 정부안 추진은 중단한 바 있다고 했다. 이후 '20.1.10. 의원입법으로 법률안이 발의되었으며, 20대 국회 회기만료로 폐기되었다고 답변하였다. 이와 관련 앞으로 신속하게 관련 입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행정심판국장은 타인에 대한 비방·욕설·모욕 등 내용을 특정할 수 없는 무분별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해 처리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행정심판법 개정)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개선)

6) 개선안은 '20. 2. 국회 정무위원회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5쪽 내용을 참조한 것임

국 민 권 익 위 원 회

개 선 요 구 · 권 고

제 목 피청구인 답변서 제출 지연에 효과적인 대책 마련

소 관 부 서 행정심판국

조 치 부 서 행정심판국

내 용

1. 업무 개요

행정심판 접수·처리는 「행정심판법」 제23조, 제24조, 제26조에 따라 하도록 되어 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서 접수 후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하여 행정심판위원회로 제출하도록 돼 있으며,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에게 답변서 부분을 송부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최근 2년간 행정심판 처리현황을 보면, 2018년은 23,043건을 접수하였고 심리·의결 건수는 25,153건이었으며, 2019년에는 24,076건을 접수했고, 21,534건을 심리·의결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행정심판법」 제24조제1항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접수하거나 송부받으면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와 답변서를 위원회에 보내도록 되어 있다.

「행정심판법」 제24조(피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등의 접수·처리) ① 피청구인이 제23조제1항·제2항 또는 제26조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접수하거나 송부받으면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제23조제1항·제2항의 경우만 해당된다)와 답변서를 위원

회에 보내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취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행정심판청구서를 접수하거나 송부받은 피청구인은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행정심판위원회에 보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행정심판은 답변서가 제출되어야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입장과 주장을 검토하여 심리·의결이 이뤄질 수 있다. 답변서 제출을 얼마나 빨리 하느냐에 따라 행정심판 재결기간이 빨라질 수도, 늦어질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최근 2년간 답변서 제출 소요기간에 따른 재결기간을 보면, 법정 기간인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 재결은 법정 기간인 90일⁷⁾ 이내에 모두 처리되지만, 10일을 초과하는 경우 재결 기간도 90일이 초과되었다.

피청구인인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들이 법적 답변서 제출기한에도 불구하고 기한을 도파하는 경우가 '18년에는 3,903건, '19년에는 3,689건이나 될 정도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었다.

[표 8] 최근 2년간 피청구인 답변서 제출 소요기간별 건수 및 재결기간 현황

(단위 : 건, 일)

구 분		'18년	'19년
합 계		25,153	21,534
~10일	건 수	21,250 (84.5%)	17,845 (82.9%)
	평균재결기간	61.9	57.1
10일 초과 합계	건수	3,903 (14.5%)	3,689 (17.1%)
11~20일	건 수	1,838	1,814
	평균재결기간	135.8	98.1
21~30일	건수	600	595

7) 「행정심판법」 제45조 제1항에 따르면, 재결은 행정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야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따라서 처리기한을 90일로 볼 수 있다.

	평균재결기간	173.3	114.1
31~40일	건수	291	386
	평균재결기간	177.4	115.5
41~50일	건수	247	229
	평균재결기간	201.9	109.8
51일 초과	건수	927	665
	평균재결기간	332.4	219.9

(자료 : 행정심판국 제출자료 재구성)

특히, 최근인 '20.5.28. 행정심판국에서 피청구인인 공공기관에 답변서 제출을 독촉하는 내용으로 보낸 공문을 보면, 50일 이상 답변서 제출을 장기 지연하는 건이 99건이었고, 제출기한이 200일 이상이 지났는데도 답변서가 제출 되지 않은 경우도 10건이나 있었다.

[표 9] 최근 50일 이상 답변서 제출 지연('20. 5. 28. 기준) 건수 현황

(단위 : 건, 일)

답변서 제출 지연일수	지연 건수	해당기관 수
합계	99건	20개 ⁸⁾
50~99일	49건	11개
100~149일	18건	5개
150~199일	22건	5개
200일 이상	10건	5개

(자료 : 행정심판국 답변서 제출 독촉 공문<5.28.>자료 재구성)

행정심판국은 답변서 제출을 독려하기 위하여 차관회의('18.8.27.)에서 각 행정청의 답변서 제출현황을 보고하여 답변서 제출기간을 준수하도록 촉구하기도 하였다. '19년부터는 행정심판총괄과 이외에 행정심판을 담당하는 각 심판과에서도 해당 행정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공문 독촉을 통해서 답변서 제출을 독려하고 있으나 현행 제도상 각 행정청이 신속하게

8) 각 지연일수별 기관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서 지연일수별 기관의 합계와 총 합계가 일치하지 않음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은 없는 실정이다.

반면에 국민권익위원회 주요기능 중 하나인 고충민원의 조사와 취업제한 업무를 살펴보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3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수행을 방해·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고의로 지연시킨 자 등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 관련 행정청이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1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42조*에 따른 업무수행을 방해·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고의로 지연시킨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82조의2**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공공기관의 장

* 제42조: 제42조(조사의 방법) ① 권익위원회는 제41조에 따라 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행정기관등에 대한 설명요구 또는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구
2. 관계 행정기관등의 직원·신청인·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3. 조사사항과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시설 등에 대한 실지조사
4. 감정의 의뢰

** 제82조의2: 제82조의2(자료 제출 요구) 위원회는 제82조에 따른 취업제한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범죄경력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처럼 행정심판 업무에도 답변서 제출을 지연하는 행정청을 제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행정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답변서 제출을 지연하는 것은 일반국민인 청구인의 신속한 권리구제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소극행정⁹⁾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행정청의 답변서가 정당한 사유없이 지나치게 지연될 경우 해당 행정청의 감사실에도 답변서 지연 사실을 통보하여 관련사항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9) 소극행정 :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제2조)

관계부서 의견

행정심판국에서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피청구인인 행정청의 답변서 제출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행정심판법」 개정 추진을 준비하고 있으며, 해당 행정청의 감사실로 하여금 답변서 제출현황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행정심판국장은 행정심판 제도가 ‘신속한 권익구제 절차’라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게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심판법」 개정 등을 통해 행정청이 답변서를 신속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개선)

아울러 행정심판국장은 행정심판에 대한 답변서가 정당한 사유없이 과도하게 지연되는 경우 해당 행정청의 감사실로 답변서 지연사실을 알려 해당 행정청이 답변서 제출현황을 자체 점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권고)

국 민 권 익 위 원 회

통보·통보

제 목 민원처리법령상 처리기한 준수 부적정

소 관 부 서 행정심판국

조 치 부 서 행정심판국

내 용

1. 업무 개요

행정심판국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일반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감사대상 기간('18.4.~'20.5.) 동안 신청된 민원은 총 2,157건으로 월 평균 86건이 제기되었다.

민원관리대장과 위원회 민원정보분석시스템을 통해 분석한 결과 연도별 민원이 가장 많은 때는 '18년은 10월, '19년은 9월, '20년은 2월이었는데, 주요 원인은 시기마다 몇몇 특정인의 반복민원이 빈발했기 때문이었다¹⁰⁾.

전체 2,157건 중 반복민원은 1,166건으로 전체의 절반이 넘는 54.1%에 이를 정도로 많았는데, 내용은 대부분 행정심판 재결 관련 이의제기나 불만으로 확인되었다. 반복민원 중 거의 대다수는 종결(780건, 반복민원의 66.9%)이나 일괄답변(382건, 32.8%)으로 처리되었다.

민원내용은 행정심판 관련 이의제기나 불만 등이 1,675건(77.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법령 질의나 행정심판 관련 문의 194건(9.0%), 행정심판법령 등 제도 및 운영사항 건의·요청 131건(6.1%) 등의 순으로 많았다.

10) 자세한 민원현황, 민원내용 등 민원분석 자료는 '참고 행정심판국 민원분석 자료' 참조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민원은 일반민원과 고충민원¹¹⁾으로 구분되고, 일반민원은 내용에 따라 다시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기타민원으로 분류된다.

[표 10] 일반민원의 종류

일반민원	정의
법정민원	▶법령·훈령·예규·고시·자치법규 등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인가·허가·승인·특허·면허 등을 신청하거나 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
질의민원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
건의민원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기타민원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및 고충민원 외에 행정기관에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 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등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와 제15조에 따르면, 민원은 질의민원과 건의민원의 경우 접수 후 14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질의민원의 경우 제도·절차 등 법령 외의 사항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간단한 사안의 경우 7일 이내에 민원을 처리하게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 민원신고심사과의 민원접수 담당자는 민원을 접수하면서 국민신문고 시스템에 민원종류나 성격에 따라 처리기한을 설정한다.

민원관리대장을 확인한 결과 행정심판국의 경우 감사대상 기간 동안 신청된 민원 2,157건 중 1,930건이 14일로 처리기한이 설정돼 있고, 92건은

11) 고충민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민원(행정기관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

7일로 설정돼 있었으며, 나머지 135건은 처리기한 설정은 없었지만 7일이 내에 처리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접수된 민원 중 행정심판국의 소관에 속하지 않은 민원의 경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 내 다른 부서로 이송하는 경우 3근무시간 이내, 다른 행정기관으로 이송하는 경우 8근무시간 이내에 이송하여야 한다.

우리 위원회 국민신문고과에서는 행정안전부(민원제도혁신과)와 함께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를 실시하면서, 민원만족도 향상을 위해 민원인이 국민신문고 민원답변에 대해 ‘불만족’을 표시하면, 추가답변을 하도록 하고 있다. 추가답변을 하지 않으면, 기관 민원서비스 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되어 있다.

따라서 행정심판국은 민원처리법령에 의거 소관 민원을 14일 등 민원처리기한 내에 처리해야 하고, 소관 민원이 아닌 경우 3근무시간 또는 8근무시간 내에 다른 부서나 다른 기관에 이송해야 한다. 아울러 민원만족도 향상을 위해 불만족민원에 대해서는 추가답변을 실시하여야 한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발굴·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제기된 민원 중 행정심판 운영이나 제도개선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및 개선사항

감사대상 기간('18.4.~'20.5.) 동안 행정심판국에서 처리한 민원처리실태 점검 결과¹²⁾를 확인한 결과, 민원처리기간을 초과한 건수는 전체 민원처리 2,106건 중 121건이었다. 처리기간을 초과한 건수는 '18년이 120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19년은 1건, '20년은 처리기한 초과 건수가

12) 점검결과는 '18.4.~'20.4. 처리한 민원에 대한 실태점검 결과이므로 민원신청 건수보다 적음

없어 최근에는 점차 나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행정심판국이 '19년 2월부터 민원처리 담당자의 일원화 등 민원업무처리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한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민원업무처리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다른 행정기관 등에 민원을 이송하는 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건수는 전체 이송 8건 중 6건이었다. 이송 건수와 처리기간 미준수 건은 모두 '19년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민신문고 민원 불만족평가에 대해 추가답변을 미실시한 건수는 전체 불만족평가 민원 421건 대비 283건으로 67.2%라는 매우 높은 비율을 보이는데, 특정1인(김○○)의 재결에 대한 이의를 주장하는 반복민원(313건)이 다수였다.

불만족평가 대상 민원의 추가답변 미실시 건도 민원처리기한 미준수 건과 마찬가지로 '18년이 281건으로 가장 많으며, 그 중 특정1인(김○○)의 추가답변 미실시 266건이 포함된다.

[표 11] 행정심판국 민원처리실태 점검결과

월별	처리(이월포함)		이송		불만족평가	
	전체	처리기간 미준수	전체	이송시간 미준수	전체	추가답변 미실시
합계	2,106	110	8	6	421	283
'18년 (4~12월)	707	109	0	0	334	281
'19년 (1~12월)	975	1	8	6	66	2
'20년 (1~4월)	424	0	0	0	21	0

(자료 : 감사담당관실 해당기간 민원처리실태 점검결과 재구성)

민원처리기한과 이송시간 준수는 민원처리법령에 규정된 것으로 지켜야 하는 것이며, 불만족평가에 대한 추가답변도 민원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30일 이내에 처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처리기한 등을 준수하지 않으면 기관의 대외적 신뢰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발굴·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행정심판국은 재결기간 단축을 위한 인력증원 요청, 공공기관의 답변서 제출기한 준수 노력 및 처벌 규정 마련 요청 등에 대한 건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제도개선 건의내용>

건의 민원내용	검토 및 반영 내용
행정사에게 온라인 행정심판을 통해 대행 제출 가능토록 요청('19년 1월 '20년 6월)	· 현재 행정사가 대행제출 할 수 있도록 온라인 행정심판 홈페이지 개선 추진검토 중
재결레집 현행화 요청('19년 4월)	· 2019년도 재결레집 현행화 완료 및 최신 재결레 업데이트 주기적 실시
신속한 재결을 위해 인력증원 요청('19년 12월)	· 안건검토 인력의 증원을 위해 각 시도 등에 파견 요청('20년 3월경 파견자 1명 인사배치) · 행정심판 안건처리를 위한 증원 요구('20.7.8.자 일반임기제 2명 증원)
공공기관의 답변서 제출기한 준수 및 처벌규정 마련 요청('20년 4월)	· 피청구인의 답변서 제출 지연 방지 등을 위해 의원실과 행심법 개정 추진 협의 중

관계부서 의견 행정심판국은 문제점에 대해 공감하면서, '19년 2월부터 민원처리 담당자를 일원화하여 응대의 신속성 및 처리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등 민원처리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 결과 '19

년부터 민원처리기한 준수율이 매우 개선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민원처리 법령을 준수하여 민원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행정심판국장은 앞으로 민원처리기한과 이송기한을 초과하는 일이 없도록 민원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민원인이 국민신문고에 불만족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추가답변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통보)

아울러 행정심판국장은 행정심판 제도나 운영 등 건의사항 중 타당하거나 합리적인 의견 등에 대해서는 현행처럼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국민의 소리가 제도나 행정심판운영 개선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통보)

참고 행정심판국 민원분석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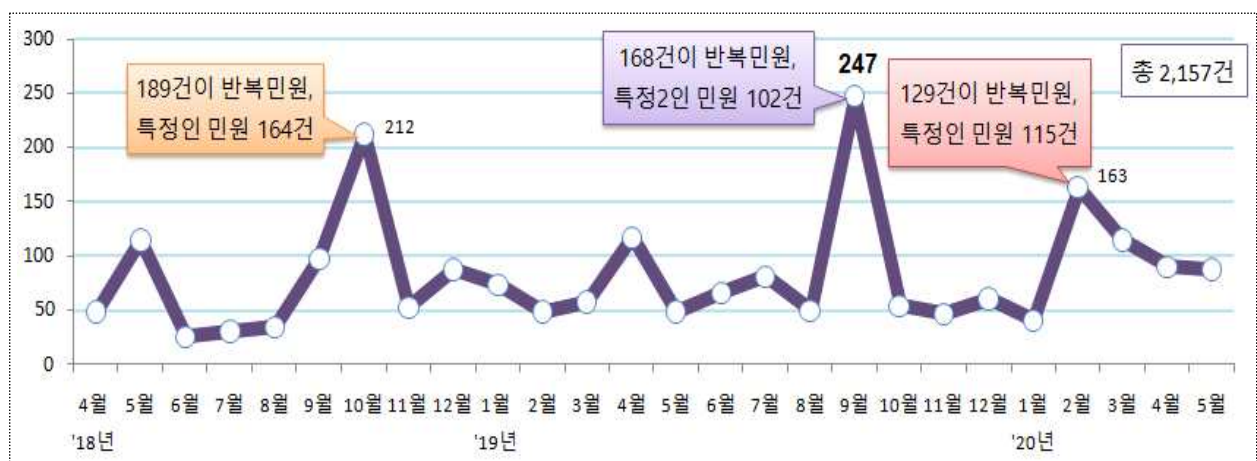
□ 민원발생 추이

○ 감사대상 기간인 '18년 4월부터 '20년 5월까지 행정심판국에 제기된 민원은 총 2,157건임

- 연도별 민원이 가장 많은 때는 '18년은 10월, '19년은 9월, '20년은 2월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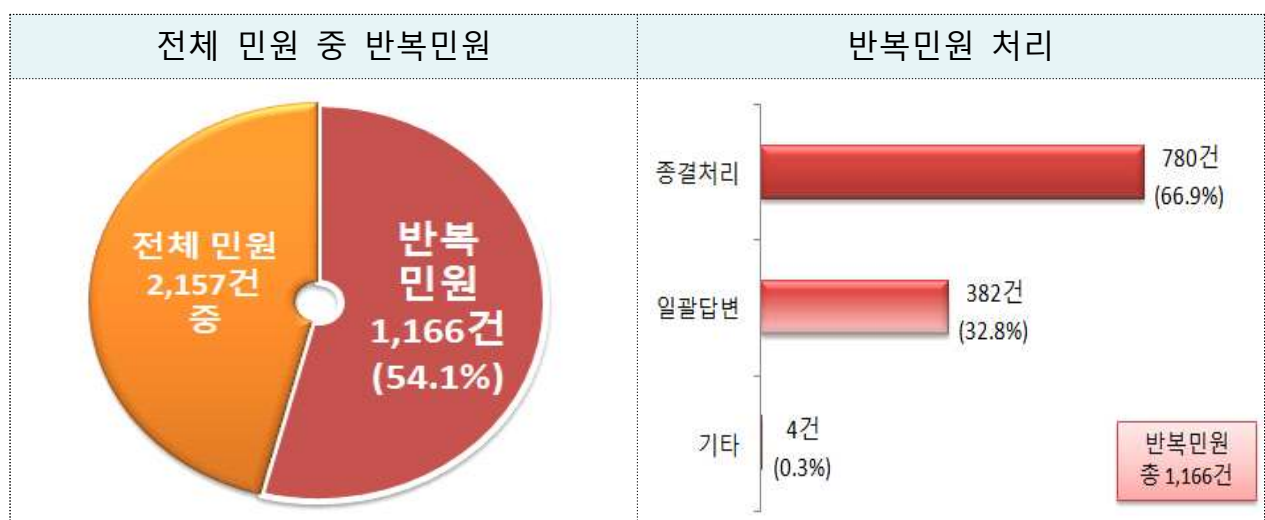
※ 공통적으로 반복민원이 많았으며, 특히 특정인이 많은 민원을 제기하여 민원이 많은 것으로 분석됨

< 연도별 월별 민원제기 추이 >



□ 총 민원 중 반복민원

○ 총 민원 중 반복민원은 전체의 54.1%(1,166건)로 절반이 넘었는데, 반복민원의 66.9%(780건)는 종결처리, 32.8%(382건)는 일괄로 답변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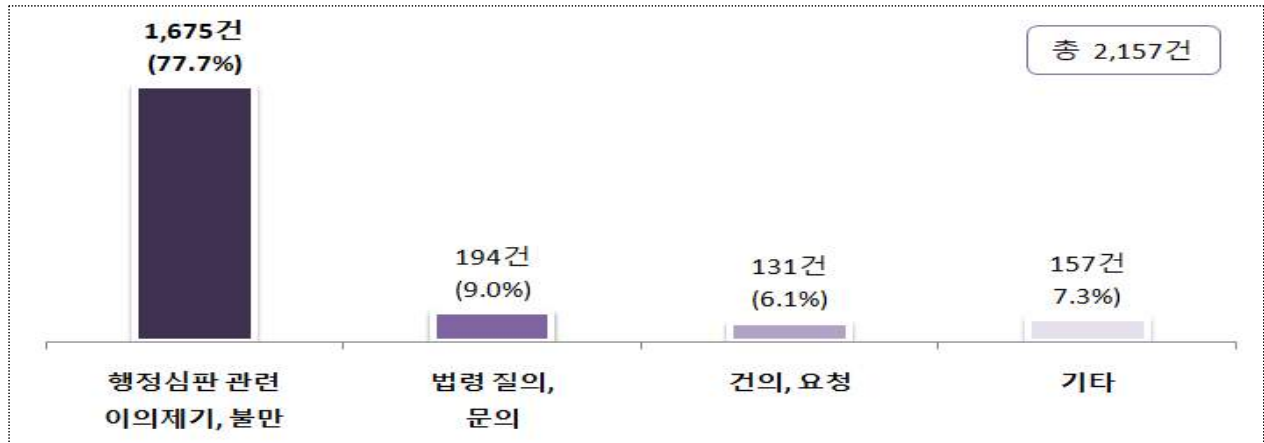


(자료 : 민원정보분석시스템과 행심국 민원관리대장 자료 활용 분석)

□ 민원내용별 유형

- 내용별로 가장 많은 유형은 행정심판 재결과 관련된 이의제기와 불만 (77.7%)이며, 행정심판법령 관련 질의 및 문의가 다음(9.0%) 순

< 내용별 유형 >



(자료 : 민원정보분석시스템과 행심국 민원관리대장 자료 활용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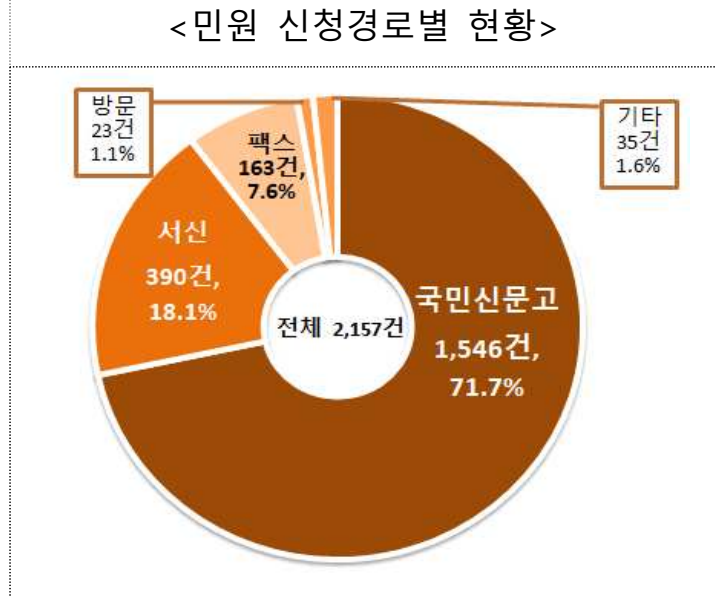
- 행정심판 관련 이의제기는 반복민원이 대부분이고, 건의 관련 민원은 행정사의 행정심판 대행 요청, 인력증원 요청 등 다양하게 제기됨

< 유형별 주요 민원사례 >

유형별	주요 민원사례
행정심판 관련 이의제기, 불만	• 여러 부처에 민원을 제기하고, 그 처리 관련 공무원에 대한 정보 공개 등에 대한 재결이 인용되지 않자 이의제기(반복민원 지속)
법령질의, 문의	• 고시(행정규칙) 부당한 유권해석의 행정심판 대상 여부('18년 10월) • 집행정지 신청서 및 행정심판 청구서 제출에 대한 문의('18년 11월)
건의, 요청	• 가뜰이나 불경기에 숙박업소 등이 악의적인 청소년들에게 신고돼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가 일어나는데, 행정심판 제기 시 <u>행정사들</u>에게 온라인 행정심판을 대신할 수 있게 해주기 바람('19년 1월) • 법원판결문은 인터넷으로 요청하면 인적사항 가림 후 제공이 되는데, <u>행정심판 재결례 사례</u>는 어디에 요청하는지 알 수 없어 국민신문고를 통해 요청함('19년 4월) • 온라인행정심판 홈페이지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u>재결례집</u>이 2016년 이전만 등록돼 있는데, <u>현행화</u> 해 주기 바람('19년 4월) • 행정심판 재결까지의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고 있음. <u>신속한 재결</u>을 위해 <u>인력증원</u>을 요청드림('19년 12월) • 민원인의 행정심판 청구건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답변서 제출기한 준수 및 <u>처벌규정 마련</u> 요청('20년 4월)

□ 민원 신청경로 현황

- 민원을 신청한 경로는 국민신문고가 71.7%(1,546건)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서신이 18.1(390건)%, 팩스를 통한 민원이 7.6%(163건) 순이었음



(자료 : 민원정보분석시스템과 행정심판국 민원관리대장 자료 활용 분석)

□ 시사점

- 행정심판법령 등 행정심판에 관한 다양한 국민의 소리를 정책이나 제도 운영에 반영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
 - (예시) 재결레짐 현행화 등 행정심판 재결레 검색 용이토록 운영
 - 신속한 재결을 위한 효율적인 인력증원 방안 추진
 - 피청구 기관 답변서 제출 지연 시 효과적인 대책 마련 등

국 민 권 익 위 원 회

개선요구

제 목 업무 인계·인수 시 문서 ‘인계인수시스템’을 통한 관리
부적정

소 관 부 서 행정심판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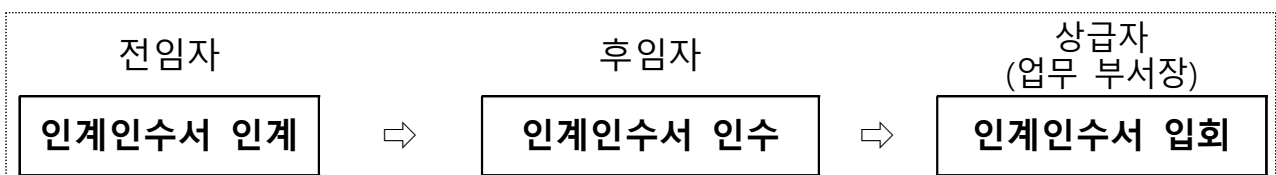
조 치 부 서 행정심판국

내 용

1. 업무 개요

공무원이 조직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업무가 바뀔 때에는 해당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 업무 인계·인수서를 작성한다. 전임자는 인계서를 작성하고, 후임자는 인계서의 내용을 확인 후 인수하며, 인계·인수자의 상급자는 입회하도록 되어 있다.

[그림 2] 업무 인계·인수 흐름도



감사대상 기간('18.4.~'20.5.) 행정심판국 6개과 1개팀에서는 총 98건의 인계인수서가 작성되었다. 인계인수서의 내용에는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인계·인수하는 심판사건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이 업무를 인계·인수할 때는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에는 시스템을 통해 인계·인수할 때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업무 인계·인수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서식에 따라 인계자·인수자와 인계자의 바로 위 상급자는 입회를 확인해야 한다.

[그림 3]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해당부분 발췌

위와 같이 인계·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계자	(서명 또는 인)		
인수자	(서명 또는 인)		
입회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비고(이 남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입회자는 인계자의 바로 위 상급자가 된다. 다만, 인계자가 기관장 및 부기관장인 경우에는 바로 아래 하급자가 된다.
2. 기재 항목이나 내용은 기관의 실정이나 인계·인수 사항에 따라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인계자, 인수자 및 입회자의 서명 또는 날인은 생략할 수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제1항과 같은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업무 인계·인수 시 온나라 ‘인계인수시스템’을 통해 인계·인수와 입회가 완료되어야 한다.

[그림 4] 인계인수시스템 화면



[그림 5] 인수·인계·입회 완료 화면 예시

인계자	인수자	입회자	상태
장	고	김	입회완료

위와 같이 인계·인수합니다.

인계자	장
인수자	고
입회자	김

그러나, 인계인수시스템을 통해 행정심판국의 감사대상 기간에 대한 인계인수 실태를 확인한 결과, 시스템상 인계·인수·입회가 완결되지 않은 사례가 17건 확인되었다.

[그림 6] 인수·입회 미결상태 화면 예시

인계자	인수자	입회자	상태
조	신	성	인수요청

위와 같이 인계·인수합니다.

인계자

조

인수자

입회자

[그림 7] 입회 미결상태 화면 예시

인계자	인수자	입회자	상태
국	모	이	입회요청

위와 같이 인계·인수합니다.

인계자

국

인수자

모

입회자

세부적으로 보면 시스템 상 입회 미결 건수 14, 인수·입회¹³⁾ 미결 건수 2, 시스템으로 인계·인수하지 않고 수기로 인계·인수한 1건이 있었다.

[표 12] 시스템 상 감사대상 기간 행정심판국 인계·인수·입회 현황

부서별	인계인수 건수	입회미결 건수	인수·입회 미결 건수	수기작성 건수
합계	98	14	2	1
행정심판총괄과	39	2	0	0
행정교육심판과	15	7	0	1
국토해양심판과	16	1	1	0
재정경제심판과	5	0	0	0
사회복지심판과	13	1	1	0
환경문화심판과	7	2	0	0
운전심판팀	3	1	0	0

(자료 : 온나라 인계인수시스템과 행심국 제출자료 확인 결과)

13) 인수가 완료되지 않으면, 입회가 진행될 수 없음

관계부서 의견 행정심판국에서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직원들이 인사이동, 업무 변경 등으로 업무를 인계·인수·입회할 때는 전자문서 시스템을 이용하여 완료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하였다.

조치할 사항 행정심판국장은 앞으로 직원들이 업무 변경 등으로 업무를 인계·인수·입회할 때는 온나라 인계·인수시스템을 통해 인계·인수·입회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개선)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시정 및 주의

제 목 특근매식비 부적정 집행 및 특근매식비 집행 증빙자료 미흡

소 관 부 서 행정심판국

조 치 부 서 행정심판국

내 용

1. 업무 개요

위원회 각 부서에서는 초과근무 2시간 이상 근무자에게 매월 특근매식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각 부서에서는 관서운영경비 지급요청서를 증거서류와 함께 주무부서에 제출하고 주무부서는 이를 검토·결의하여 예산을 집행한 후 「계산증명규칙」에 따라 증거서류 등을 편철·보관하고 있다.

2.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특근매식비는 정규근무시간 개시 2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종료 후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또는 휴일에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해야한다. 특히 유연근무를 실시하는 경우 근무 개시 전·후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되, 정규근무시간(09시~18시) 중에는 지급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계산증명규칙」 제31조에서 제33조에 따르면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은 관서운영경비 출납계산서의 증거서류로서 결의서, 영수증 등 기타 지출의 내용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 등을 첨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1-5. 특근매식비(210-05목))

가. 지급대상자

- 정규근무시간 개시 2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종료 후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또는 휴일에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 유연근무를 실시하는 경우 근무 개시 전·후 2시간 근무하는 자에게 특근매식비를 지급한다. 다만, 정규근무시간(9~18시) 중에는 특근매식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감사대상기간의 특근매식비 지급 실태를 점검한 결과, 3개 부서에서 초과근무 2시간 미충족자 등에 대하여 특근매식비 총8건, 48,000원을 부적정하게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표 13] 특근매식비 부적정 지급 내역

해당 부서	부적정 지급건수	부적정 지급액	사유
계	8건	48,000원	
행정교육심판과	3건	18,000원	초과근무시간 미충족
재정경제심판과	2건	12,000원	초과근무시간 미충족
운전심판팀	3건	18,000원	초과근무시간 미충족, 유연근무자 정규시간 퇴근

(자료 : 관서운영경비 출납서류 확인 결과)

또한 감사대상기간의 관서운영경비 출납계산서 적정 여부를 검토한 결과, 행정심판총괄과의 특근매식비 집행 증빙자료 중 일부가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표 14] 특근매식비 집행 증빙자료 누락 세부 내역

해당 부서	증빙자료 누락 세부 내역
행정심판총괄과	'19.10.~12. 3개월간 특근매식비 지급대상자의 초과근무현황 및 유연근무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e-사람 초과근무 세부내역 자료 누락

(자료 : 관서운영경비 출납서류 확인 결과)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은 관서운영경비 출납계산서의 증거서류로서 지출의 내용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 등을 첨부하여 보관할 의무가 있는바, 특근매식비 지출을 위해서는 그 대상자의 e-사람 출퇴근시간뿐만 아니라 근무지의 출장 여부, 유연근무 여부, 정규근무시간(9시~18시) 전후 출퇴근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상세 자료 및 이에 따른 매식비 지급대상자 명단이 반드시 첨부되어야 한다.

따라서, 행정심판총괄과는 특근매식비 집행 증빙자료로서, 어떤 기준으로 어떤 직원에게 특근매식비를 지급하였는지 알 수 있는 e-사람 초과근무 세부내역 등을 반드시 관서운영경비 출납계산서에 첨부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관계기관 의견 행정심판국에서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며, 부적정하게 지급된 특근매식비는 반납조치 할 것이며, 앞으로 특근매식비 부적정 지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숙지하여 집행하겠다는 답변을 하였다.

조치할 사항 특근매식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한 위 소관부서는 부적정하게 지급된 금액을 반납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특근매식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한 위 소관부서는 특근매식비 지급 시, 초과근무 2시간 충족 여부 및 유연근무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지급하시기 바랍니다.(주의)

행정심판총괄과는 특근매식비 집행 증빙자료로서, e-사람 초과근무 세부내역 및 특근매식비 지급대상자 명단 등을 반드시 관서운영경비 출납계산서에 첨부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국 민 권 의 위 원 회

주 의

제 목 업무추진비 50만원 이상 집행 관련 규정 미준수

소 관 부 서 행정심판국

조 치 부 서 행정심판국

내 용

1. 업무 개요

위원회 각 부서에서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면서 집행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실·국장급 전결(심의관 직속은 심의관 전결)로 처리하며 주된 참석자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기재하고 있다.

2.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제13조제1항 및 별표1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를 50만원 이상 집행한 경우 실·국장급 전결(심의관 직속은 심의관 전결)로 처리하여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제13조(전결사항 및 전결권자) ① 위원회의 위임전결사항 및 전결권자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위원회 위임전결사항 및 전결권자(제13조제1항 관련)

1. 공통사항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과원	과장· 담당관	심의관	실·국 장	사무처 장	위원장
17	예산회계	업무추진비	50만원 이상 (단, 심의관 직속은 심의관 전결)				○		
			50만원 미만		○				

또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및 「국민권익위원회 업무추진비 세부 집행지침」에서는 업무추진비 집행액이 건당 50만원 이상인 경우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4. 업무추진비(240목))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일시·장소·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감사대상기간의 업무추진비 50만원 이상 집행 내역을 검토한 결과, 총2건이 집행 관련 품의서를 실·국장급 전결이 아닌 과장 전결로 처리하였으며, 이 중 1건은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기재하지 않은 채 품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15] 업무추진비 50만원 이상 집행 관련 규정 위반내역

부서명	사용일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사용금액(원)	명단 첨부	실국장 전결
계		2건			
행정심판	'18.05.14.	행정심판국 직원 체육대회 간담회	740,000	X	X
총괄과	'19.11.15.	보훈사건 비상임위원 간담회	692,000	○	X

업무추진비를 50만원 이상 집행하는 경우에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집행 관련 품의서에 참석자 명부를 반드시 기재·첨부하여, 실·국장급 전결로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것이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관계기관 의견 행정심판국에서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업무

추진비 50만원 이상 집행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참석자 명부 포함 및 실·국장급 전결 처리 등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겠다는 답변을 하였다.

조치할 사항 행정심판총괄과는 업무추진비를 50만원 이상 집행할 경우 반드시 위원회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실·국장급 전결로 처리하시고,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주 의

제 목 정부구매카드 사용 후 실명서명 미흡

소 관 부 서 행정심판국

조 치 부 서 행정심판국

내 용

1. 업무 개요

위원회 각 부서에서는 정확한 예산집행을 위하여 정부구매카드를 사용 후 카드전표 등 카드사용 영수증에 사용자가 실명으로 서명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 제22조의2 및 「국민권익위원회 업무추진비 세부 집행지침」에 따르면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한 경우 사용에 따른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카드사용 영수증에 사용자가 실명으로 서명하여야 하며, 서명란이 없는 경우 여백을 이용하여 서명하여야 한다.

또한 카드 영수증에 실명서명이 없거나, 사용자를 알아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서별 회계처리 담당자가 정확한 사용자를 알 수 있도록 서명을 보완하여야 한다.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

제22조의2(정부구매카드 사용자의 실명 서명의무)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한 경우 사용에 따른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카드전표 등 카드사용 영수증에 사용자가 실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카드전표 등에 서명란이 없는 경우에는 여백을 이용하여 서명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감사대상기간의 정부구매카드 영수증 서명 실태를 점검한 결과, 업무추진비 영수증은 실명 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비 영수증은 감사대상기간의 상당 수 서명이 누락된 것을 확인하였는데, 이는 업무추진비 뿐만 아니라 기타 비목의 집행시에 사용하는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사용자가 실명으로 서명해야하는 관련 지침의 숙지가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행정심판국 각 부서는 정부구매카드 사용시에는 반드시 실명서명을 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부서별 회계처리 담당자는 해당 서명을 확인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관계기관 의견 행정심판국에서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며, 앞으로 정부구매카드 사용 시 사용자가 실명으로 서명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하였다.

조치할 사항 행정심판국 전 부서에서는 정부구매카드 사용 후 반드시 사용자가 실명으로 서명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국 민 권 익 위 원 회

통보(모범사례)

제 목 수요자 중심의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도 운영

소 관 부 서 행정심판국

조 치 부 서 행정심판국

모 범 부 서 행정심판국 행정심판총괄과

모 범 내 용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법」 제18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법률지식이 부족해 홀로 행정심판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연금수급자,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대상자 등 경제적 약자를 위해 무료로 국선대리인을 선임해 주는 제도를 2018년 1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를 운영하면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더 많은 저소득·소외계층이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심판 청구인을 대상으로 문자메시지 및 전자우편 등으로 국선대리인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있었다. 그 결과 2018년에는 2건이었던 국선대리인 선임실적이 2019년에는 116건으로 늘어났고, 2020년 5월까지 48건이 선임되는 등 시행 초기에 비해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더 많은 국민들이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균형과 양성평등을 고려하여 국선대리인을 추가 위촉(50명 → 70명)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국선대리인 서비스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그러한 노력으로 국선대리인이 활동한 사건에서 행정심판 청구가 인용

되거나 조정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었다.

[국선대리인 활동을 통한 권익구제 사례]

행정심판 청구가 인용된 사례	조정으로 해결된 사례
◇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 택시기사인 청구인이 외국인 승객의 승차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행정청은 청구인에게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을 하였음 ◇ 국선대리인의 활동 ■ 국선대리인은 청구인이 당시 내비게이션 고장으로 외국인 승객의 목적지 파악을 위해 114에 전화를 거는 등 노력을 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통화 상세 내역서 등 사실관계 입증서류를 적극 제시함 ◇ 결과 : 인용 재결 ■ 청구인에게 승객을 승차시킬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중앙행심위는 승차거부를 이유로 한 처분청의 경고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재결	◇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 해병대를 전역한 청구인이 우측 어깨 습관성 탈구 등으로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위해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행정청으로부터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등급 기준에 미달한다는 통지를 받았음 ◇ 국선대리인의 활동 ■ 국선대리인은 처분청이 불충분한 신체검사 결과에 터잡아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는 사실을 적극 주장하는 보충서면을 제출함 ◇ 결과 : 재심의하는 것으로 조정 ■ 중앙행심위는 양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청구인에 대한 정확한 신체검사를 한 후 보훈심사위원회에 재상정해 심의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음

아울러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 과정에서 국민에게 큰 불편으로 다가오는 사항을 선제적으로 발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파악한 바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신청인들이 불편하게 느끼는 사항은 국선대리인 선임 시 필요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것이었다. 지원대상별 필요한 자료를 보면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 등이 있다.

[국선대리인 지원대상별 제출서류]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
- 기초연금수급자의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경우: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및 장애인연금 지급 통지서
-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의 경우: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 기타 경제적 능력 부족으로 대리인을 선임하기 곤란한 경우: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등

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선대리인 신청인들이 불편함 없이 국선대리인을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제7조를 신설('20.6.19.)하고, '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제7조(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영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청구인으로부터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청구인이 영 제16조의2제1항제1호·제2호·제4호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된 제도는 신청인들이 직접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국선대리인 선임에 필요한 증빙서류와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신청인들의 불편을 덜어 주는 것이다.

이로써 국선대리인 제도를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앞으로 더욱 많은 수요자들이 더 편리하게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치할 사항 행정심판국 행정심판총괄과(업무담당자)는 수요자 중심의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도를 운영·발전시킨 데 대한 공적이 크다고 인정되어 연말 자체감사 표창 대상으로 추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통보(모범사례)]